

# 후세 타츠지의 이념적 재평가\*

## - 공산주의자인가 민주주의자인가?



최 윤 도 (동북아역사재단)  
(wdchoi@nahf.or.kr)

###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일본인 쉰들러'라고 부르는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의 조선민중들과 관계는 1919년 2·8 독립선언에 참가했다가 구속된 조선인 유학생들에 대한 변호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53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조선인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이어졌다. 1차 대전을 전후하여 시작된 대정민주주의 시기의 일본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들은 후세의 활동과 일체화되어 있었다. 그의 운동이 급진적이고 좌익적 성향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당시 국제사회에 유포되었던 사회혁명의 조류와 일본사회에서 진행된 시민운동과도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활동은 그의 사상만큼이나 인간의 양심에 대한 굳은 믿음과 민중을 위해 살겠다는 신념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강렬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그러한 성격은 후세의 가족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를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 변호사가 아니라 급진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요구한 변호사로 결론내리고 있다.

주제어 : 2.8독립선언, 관동대지진, 일본인 쉰들러, 대정민주주의, 후세 다츠지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용역 사업(NAHF-2019-기획연구-34)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임.

## I. 서론

2004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인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건국훈장 애족장은 5가지 건국훈장 중에서는 다섯 번째에 해당된다. 당시 외국인으로서 건국훈장을 받은 이들은 44인에 달하였으나 그 중에 일본인은 한명도 없었다. 역사 속에 묻혀있던 그를 찾아내고 건국훈장까지 받도록 한 데는 정준영이라는 한 개인의 공이 크다. 그는 10여년간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는 정부에 건국훈장 서훈을 신청했다. 쉽게 될 것 같았던 서훈신청은 3년간 계속되었고 시기상조라던 평가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4년 서훈이 결정되었다. 한국건국훈장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 후세 다츠지(布施辰治, 1880-1953). 훈장은 그의 외손자인 오오이시 스스무(大石進)<sup>1)</sup> 일본평론사 사장에게 전달되었다.

이 글은 후세 다츠지를 소개하기 보다는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가 우리나라에서 건국훈장을 받게 된 이유는 이미 많이 소개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는 그와 조선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소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인이었던 그가 ‘조선인들의 친구’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와 조선인들 사이의 상호 신뢰와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오늘날 우리들의 친구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세 차례가 서훈을 미루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일본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일제의 군국주의와 전쟁 속에서 조선을 위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인가? 가족들과 주변 인물들에게 그는 어떤 인물로 비쳐졌을까? 후세와 당시 조선인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볼수록 이러한 점들은 더욱 더 궁금해진다. 그를 이해하게 되면 그는 더욱 더 우리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이 글에서는 후세와 조선인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후세의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이나 법리에 대한 입장, 혹은 그의 사상에 대한 규명은 논외로 한다. 여기에서는 그와 조선인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에 집중한다. 일본에서는 전기 형식으로 후세와 조선인들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大石進 2010; 後藤守彦 2010; 布施柑治, 황선희 역 2003; 金一勉 1974; 正木ひろし 1954)이 있고, 그의 일대기를 기록들과 함께

---

1) 오오이시 스스무(大石進)는 1935년 동경에서 출생하였다. 후세의 외손자로써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후세 아래에서 성장하였고, 어머니 (후세의 장녀), 아내와 함께 외조모인 후세 미즈코가 후세의 노후를 돌봐주었다. 후세의 저작권을 상속받았으며, 후세에게 수여된 대한민국 정부의 훈장을 수령하였다. 『법률시보』의 편집장을 거쳐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평론사 사장과 회장을 역임하였다.

검정하는 대작(森正 2014)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조선인들의 관계를 소개하는 연구들(이규수 2003, 2010; 이형남 2010; 오오이시 스스무 2010)과 조선인들 관련 그의 법사상에 대한 연구들(김창록 2015; 이경주 2010), 그리고 그의 톨스토이 사상 관련 연구(이문영 2016)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후세의 서훈을 전후로 이루어진 만큼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그의 서훈이 연기된 이유, 지금까지 후세가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일본에서 좌익 변호사로 알려졌던 그의 행적과 조선공산당과의 관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후세를 한일 역사화해의 가교로 삼기 위해서는 ‘조선인의 친구’로 알려졌던 후세에 대한 이해가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과연 공산주의자였을까?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II장은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조선과 후세의 관계를 소개한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만큼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나머지는 그의 삶을 통해 후세와 조선인들 사이에 신뢰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I장은 일본인 변호사로서의 그의 활동을 소개한다. 그는 공산주의자였을까? IV장은 그의 활동 배경이었던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일본사회를 살펴본다. 왜 그는 조선인들의 편에 섰을까? V장은 그의 사생활과 가족관계를 통해 신들러적인 행동의 근원을 찾아본다.

## II. 후세 다츠지와 조선, 조선인

### 1. 후세의 조선인 변호 시작: 2.8 독립선언,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

1918년 여름, 일본에서 쌀소동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소위 잘나가던 형사 변호사 후세의 인생 뿐 아니라 조선인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후세는 활동의 중심을 인권변호에서 계급투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바로 그 다음해인 1919년 오후 2시 간다의 조선기독교청년회관 (현재 在日本韓國YMCA會館에 해당)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주도한 2.8 독립선언이 있었다. 당시 600여명의 유학생이 참가하였고 그 중에서 60여명이 체포되었다. 1920년 6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조선인 유학생수가 682명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참가했음을 알 수 있다(後藤守彦 2010). 이들 중 11명의 피고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변호사가 선임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후세를 방문하여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다. 1심을 맡은 다른 변호사들은 식민 지배를 전제로 감형을 요구하였다. 이에 비해 후세는 조선민족의 존엄을 주장

하고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변호를 하였다. 이로써 후세는 조선 청년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大石進 외 2010). 당시 출판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선 최팔용과 백관수 등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베리아에 출병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일본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원조한다고 하면서 어째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원조하지 않는가(布施辰治 1947)”라고 질문함으로써 검사를 난처하게 만들었다(이형남 2010, 194). 후세로서는 최초의 조선인 변호였다. 후세는 이후 3.1운동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체포된 조선인 유학생들도 변호하였다.

해방 후 후세는 공동집필한 『운명의 승리자 박열』 서문에서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으로 최초의 필화사건으로 취조를 받았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조선의 독립운동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문이 발견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다. 후세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조사한 뒤 평전을 쓴 모리 타다시(森正 2014)는 “조선합병 당시, 이동재라는 남자가 찾아와 조선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것이 그 글을 쓰게 된 이유다... 그리고 <신조선>에 게재”되었다는 후세의 진술에 대해 달리 해석하고 있다. 후세는 1911년에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필화사건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동재를 만나 자신의 글을 기고했다고 하는 <신조선>은 1919년 11월 발간이 시작되었다는 점과, 1911년은 강제병합 이듬해로 독립운동이 발생하기 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1운동 이후인 1919년 11월 이후일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일본인으로서 그러한 글을 쓰고 필화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후세는 1923년 잡지 “아카하타(赤旗)” (공산당 기관지 赤旗와는 상관없음)<sup>2)</sup>의 창간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합병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한국병합을 분명하게 비판하였다. “일한의 병합은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을 해도 이면의 실체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침략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특히 조선민족에 대한 착취와 압박...”이라 하면서 그 끝에 “조선민중의 해방운동에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바친다”고 함으로써 조선인과의 연대에 대한 분명한 결의를 보여주었다(布施辰治 1923; 後藤守彦 2010).

2) 잡지 『赤旗(아카하타)』는 1922년 창립된 제1차 일본공산당의 당원들에 의해 발행된 합법적인 이론기관지였다. 이에 비해, 일본공산당의 기관지인 신문 『赤旗』는 치안유지법이 존재하던 1928년 지하기관지로 발행되기 시작한 신문으로 1935년 정간되었다. 당시에는 신문명을 ‘셋키’라고 발음하였다. 1945년 패전 후 GHQ에 의해 공산당이 합법화되면서 ‘아카하타’라는 발음으로 재발행되기 시작하였다.

## 2. 관동대지진과 박열·가네코 후미코 대역사건

후세가 첫 번째 조선 방문에서 돌아온 직후인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이 발생한 날부터 군대가 학살을 시작을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결국 군대와 경찰, 자경단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었고 그 결과 조선인 6,000명, 중국인 700명 이상이 학살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살에 대한 은폐공작이 국가에 의해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군, 경의 학살은 철저히 은폐되었다(강덕상 1999). 9월 20일 자유법조단은 후세의 제창으로 제1회 지진재해 대책회의를 열고 의제 중 하나로 조선인 피해의 진상 및 책임에 관한 건을 포함시켜 내무성과 경찰에 진상조사를 촉구하였다.

10월이 되자 조선인 유학생들은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로 결정하였고, 후세를 조선인 박해사실조사단에 고문격으로 추대하였다. 후세는 조선동포추도회에서 연설하면서 학살을 격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그 학살소식을 후세 자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조선동포 3인이 있었음을 밝혔다. 당시 조선인들과 유학생들이 얼마나 후세를 신뢰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지진대학살은 그것(계급전)에 놀아난 일본민족이 가슴으로부터 그 잘못을 추도하고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타적 국민성의 폭로였다고 생각한다(後藤守彦 2010, 102)”고 주장하였다.

관동대지진과 관련하여 조선인들에 대한 후세의 깊은 애정과 연민의 결정판은 부부로 살았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의 대역사건에 대한 변호에서 나타난다. 9월 3일 이들 둘은 함께 검거되었는데 황태자의 결혼식장에 폭탄을 투여하려고 계획했다는 혐의였다. 그들은 치안경찰법과 폭발물관리법 위반 용의로 기소되었고, 황태자 암살 모의의 대역죄가 날조되어 1926년부터 대심원에서 공판이 진행되었다. 1924년 2월 26일 1회 공판이 시작되자 후세는 조선의 예복을 입고 진술하겠다는 박열의 요구에 대한 대심원의 인정받아 냈다. 후세는 이 사건을 무죄라고 변호하면서 이 둘에 대한 옥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았다. 김일면은 후세와 박열의 법정투쟁은 ‘일본의 재판사상 예가 없는 경우’라고 평가한 바 있다(金一勉 1974).

그러나 박열은 재판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며칠 후 무기형으로 감형되었고, 가네코는 감형에 불만을 품고 독방의 이불을 찢어 끈을 만든 다음 목매어 자살했다. 박열은 아키타(秋田)형무소에서 23년 복역 후 1945년 10월 풀려났다.<sup>3)</sup> 박열이 아키타 형무소에서 출소할 때는 후세가 마중을 나갔다. 또한 박열의 ‘열열한 옹호자’였던 후세는 광복

3) 박열은 출소 후 1946년 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하고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다음해 동맹을 재일조선거류민단으로 개명하고 단장이 되었으나 1949년 민단 단장선거에 패배하였다. 그 후 한국으로 귀국하나 전쟁 때 북으로 연행되어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1974년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후 박열의 요청으로 1946년 ‘조선건국헌법초안사고(私稿)’을 조선인들과 공동 집필하였다. 이는 박열이 위원장으로 있던 건국촉진회의 대학강좌에서 교재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이경주 2019, 81). 그리고 후세는 ‘운명의 승리자 박열’이라는 제목의 박열 전기도 출판하였다. 카네코에 대해서는 사후 뒤처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형무소 뒤뜰에 묻혀있던 카네코의 유해를 후세가 발굴하여 자기 집에 안치하였다가, 나중에 남편의 고향인 문경의 산기슭에 이장해 주었다.

### 3. 조선 방문과 의혈단, 조선공산당

관동대지진 발생 직전인 1923년에는 7월 후세는 최초로 조선을 방문하였다.<sup>4)</sup> 이 방문에는 3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총독부에 대한 2차 폭파작전 미수로 1922년 12월에 검거된 의혈단원 김시현의 재판에 대한 변호를 위한 것이었으며,<sup>5)</sup> 둘째는 형평사의 경남 지부 창립기념 행사에 연사로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고, 셋째는 재일조선인 유학생들의 사상단체인 북성회의 조선 내 하계 순회강연에 변사로 초대받아 연설하기 위한 것이었다(이형남 2010). 후세는 짧은 기간 동안 초인적인 일정을 소화하여 변호와 연설 등을 이어나갔다.

1926년에는 후세의 두 번째 조선방문이 이루어졌다. 궁삼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민들이 동양척식회사를 상대로 농지 반환 요구 투쟁을 시작하게 되자, 후세는 그 소유권확인 소송의 조사를 위해 조선을 직접 방문한 것이다. 그러나 총독부 당국의 방해로 공소에 이르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우에는 자치회관에서 열린 조선사정강연회에서 후세는 동양척식회사가 조선농민들로부터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합법적인 사기를 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이규수 2010, 2003).

1927년 9월13일에는 경성지방법원에서 조선공산당사건의 공판이 시작되었다. 피고는 박헌영 외 101명이었다. 9월 20일 김형두는 후세에게 편지를 보내 조선의 변호사들은 연약하고 견해가 없어서 민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선생께서 왕림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해 10월 후세는 3번째로 조선을 방문하였다.

4) 후세는 1923년, 1926년, 1927년 10월과 12월 모두 4차례 조선을 방문한다.

5) 의혈단원의 단장은 약산 김원봉이었다, 김시현은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국내로 잠입, 조선총독부에 대한 파괴와 암살 등을 계획하던 중 체포되었다. 의혈단은 1919년 길림성 파호문외에서 13명이 결의하고 창단하였다가 1920년 본부를 북경으로 이전하고 1925년까지 활동하였다. 1923년 1월에는 ‘조선혁명선언’(신채호 작)을 발표하였는데, 후세는 이에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1924년 동경의 황거입구에 있는 불심검문에 걸려 폭탄 2발을 투척하였다가 불발에 그친 니쥬바시(二重橋)폭탄사건의 주범인 의혈단원 김지섭도 후세가 변호하였다.

1929년에는 후세와 최승만이 발기인대표로, 재일조선인 노동산업협회생자 구원회를 결성하여 조선인 노동자들을 변호하였고, 1930년에서 아이치현에서 철도공사에 종사하던 조선인노동자들이 임금미지급에 항의하여 파업에 돌입한데 대해 관헌이 탄압함으로써 발생한 노동쟁의사건의 변호를 맡아주었다. 1931년 1월에 발생한 유중환, 유록중 형제의 사복형사살해사건을 맡아 1932년의 배심재판에서 변호하였는데, 이들에게 살의가 없었음을 인정시킴으로써 살인죄를 상해치사죄로 낮추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후세는 자신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변호사자격증을 상실하거나 투옥되기 시작하는 1933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조선인들을 변호하고 보호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水野直樹 1983; 이규수 2003).

#### 4. 조선인과의 만남: 유년기와 청년기

후세는 농촌문제로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일화에 그친 것을 보면 조선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후세와 조선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세 가지 설명이 존재한다. 첫째는 후세가 고향 에비타촌(蛇田村)에서 보낸 소년기에 형성된 조선 인식이다(後藤守彦 2010; 大石進 2010). 어린 시절부터 한문교육을 통해 조선과 중국에 대한 막연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는데 후세의 철학 중의 일부분으로 자주 거론되는 묵가의 사상도 이 시기에 습득된 것이다. 그리고 15세 무렵,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운동시기 조선에 파병되었다가 귀환한 병사로부터 농민군에 대한 추격과 학살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떠들어 대는 것을 듣고, 일본인에 대한 분노와 조선인에 대한 동정심을 느꼈다고 한다. 두 번째 계기는 메이지 대학 시기 조선인 학생들과의 조우다. 그는 대학시절 조선과 청국에서 온 학생들과 친분이 깊었다고 한다. 그러나 졸업 이후까지 이어진 친구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後藤守彦 2010).

이상의 두 가지 설명으로는 후세가 숨을 거둘 때까지 지속한 조선인들과의 연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후세 자신도 “나는 어릴 적 시골에 있었을 때부터 조선인에 대해 일본의 동정이라고 할까, 가엽게 여기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추억일 뿐 운동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後藤守彦 2010, 73)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조선인들에 대한 연대는 민중과 약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조선인들에 대한 사명감, 혹은 이들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생겨난 연대의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세 번째 설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오오이시(大石進 2010)는 후세가

조선을 방문을 계기로 대만 농민과 일본 농민들 보다 훨씬 더 학대받고 있는 것은 조선 식민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후세는 그 경험을 통해 일본인으로서의 원죄를 인정하고 약자를 위해 몸을 던질 각오를 다지게 되었을 것이다. 후세는 ‘자기혁명의 고백’ 이전에도 차별받는 사람들과 자신을 일체화하고 몸을 던지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나, 식민지 주민들의 차별과 어려운 생활을 실감하면서 그들과의 연대의 신념을 더욱 깊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 Ⅲ.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의 일생

#### 1. 유년 시절

후세는 이시노마키(石巻)시의 농촌마을 헤비타촌(蛇田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에지로(栄次郎)는 데릴사위로 들어가 후세가의 당주가 된 사람이었다. 그 지위에 묶여 자유로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 대신 집에서 책을 읽고 시사문제에 통달하여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 몸집이 작았던 후세는 밖에서 노는 대신 아버지의 말상대를 하면서 노는 시간이 많았다. 아버지한테 들은 다나카 쇼오조오(田中正造)의 이야기 (광산공해 사건을 천황에 직소해서 해결한 아시오광독사건)에 감동을 받기도 하였고, 아버지는 “돈만 밝히고 성공에 집착하는 입신출세는 악덕함의 산물이야. 이런 걸 좇는 것은 참으로 저속한 일이지(布施柑治 2003, 34)”라는 말을 자주하였고 후세는 이 말을 가슴깊이 새겼다.

소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는 후세를 이시노마키 시에 있던 고등과에 진학시키는 대신 헤비타에 있던 양명학 한학숙에 입학할 시켰다. 고등과 진학에는 비용 문제도 있었고, 그 곳의 지인에게 아이를 맡겨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 집 가족과 어울리는 사이에 세간의 영리주의나 입신출세에 물들까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다(布施柑治 2003, 37). 후세의 외손자 오오이시는 농촌 헤비타촌은 후세의 농민성의 근원이며 그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평했다. 한학숙에서 후세는 목자를 만났다. 목자의 사상은 기독교 사상과 매우 흡사하여 후세가 앞으로 접하게 될 기독교와도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大石進 2012, 17). 후세는 성장하면서 헤비타의 개업의이자 젊은 양의사인 아베 다쓰고로를 만나면서 기독교와 철학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도쿄의 니콜라이당 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랐으며, 20세기의 대사업은 부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 진화론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철학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에 감명받았다.

## 2. 동경행과 변호사로의 길: “괘관(掛冠)의 사(辭)”

후세는 18세 때인 1899년 4월, 입신출세가 아니라 철학공부를 위해 동경으로 간다고 하면서 상경하여, 동경전문학교(현 와세다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1달 만에 자퇴하고 간다의 니콜라이 신학교에 입학하지만 교장의 위선적 행위를 목격하고는 또 다시 자퇴한 후 같은 해에 명치법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1902년 7월 명치법률학교를 졸업하고 11월에는 어렵기로 소문난 판·검사 등용시험에 단번에 5위로 합격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사법관시보로 우츠노미야 지방재판소에 부임하였고 1903년 4월 검사 대리로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연이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바람에 상사와의 관계가 불편해 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남편의 외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후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후세는 살인미수로 기소장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썼다. 검사 대리 임명 후 6개월 만인 1903년 8월의 일이다. 동시에 그는 ‘직업을 버리며(掛冠の辭)’라는 글을 지방지에 게재하면서, 검사라는 직책은 늑대와도 같은 일이라고 비난하였다. 그 후 그는 변호사의 길을 시작하였다. 그의 나이 23세였다. 그리고 곧이어 형사변호사로의 명성을 쌓아 나갔다.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후세에게 하나의 큰 계기가 찾아왔다. 1904년 8월 평민신문에 게재된 톨스토이의 반전론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다. 당시는 러일전쟁이 발발이면서 대정민주주의의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던 시기였다. 일본에서는 당시 10년에 걸쳐 톨스토이 사상이 크게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그의 평화사상 뿐 아니라 무정부주의도 일본사회에 확산되었다. 후세는 톨스토이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톨스토이의 ‘인류구제 처방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독자적으로 보통선거 운동을 시작하였다. 후세가 톨스토이에 끌린 또 하나의 이유는 톨스토이의 처방전이 농민이 꿈꾸는 세계와 흡사했기 때문이다. 즉, 문명과 탐욕에 따른 발전이 아니라 농촌공동체를 통해 비폭력과 불복종으로 저항하는 이상사회의 실현 가능성을 엿보았던 것이다(이문영 2016).

1906년 도쿄 시영전차 파업사건(가격인상 반대 소요 사태)를 변호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에게 탄압받는 사회운동가들과 일본인 무산계급에 대한 최초의 변호가 되었다(오오이시 2010). 1910년에는 명치천황 암살을 계획한 혐의로 전국의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이 체포·기소하고 금고·사형판결을 받은 코오토쿠(幸徳秋水) 사건이 발생하였다. 후세는 처형된 12명 중의 한 명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해 변호를 하고자 하였으나 공동변호를 맡은 메이지대학의 은사가 “너는 법정의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변호를

시키지 않겠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변호인단에서 배제되는 일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1911년 12월에는 도쿄시전(東京市電, 도쿄시가 도쿄철도를 매수해 개설한 전기국) 파업 사건이 발생하였고 치안경찰법 위반으로 파업 주모자 가타야마 센이 검거되자 후세는 최초의 노동운동 관련 변호를 맡게 되었다.

### 3. 형사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로

형사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쌓아나가던 후세를 인권변호사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 이치가야(市ヶ谷)형무소의 후지사와 마사히로(藤沢正啓) 형무소장이다. 그는 후세에게 빈곤한 미결수들의 변호를 추천하였는데, 이 때부터 형사사건 변호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후세는 1912년 이후부터는 가난한 전과자들에게 대해 무료 변호를 시작하였고, 동료들과 검사국에서 지나치다고 주의를 받기도 하였다(布施柑治 2003). 잇따른 형사사건 변호에서의 성공으로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던 후세는 형사 변호사로서 세상의 부정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형사사법이 추구해야 할 길 뿐 아니라 사회가 추구해야 할 길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19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후세의 주장은 시민적 정의의 주장에 머물러 있던 수준이었으며, 아직 계급적 성격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당시 일본의 정치 상황에 초조감에 가까운 불만을 품고 있던 후세는 1916년 발표된 요시노 사쿠조의 ‘민본주의’ 주장에 고무되었다. 후세는 2월과 10월에 두 개의 러시아 혁명이 있었던 1917년을 자신이 사회적 운동에 나서기 시작한 해라고 술회한 바 있다. 이듬해인 1918년 발생한 쌀소송은 후세의 변호사 활동이 계급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변화는 1920년에 발표한 ‘자기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 4. ‘자기혁명의 고백’ 이후 변호사 자격증 말소까지

후세는 40세가 되는 1920년 5월 15일, 자신의 개인잡지 『법정에서 사회로』에 ‘자기혁명의 고백’이라는 서간형식의 글을 실고 언론과 친지들 그리고 피고들에게 보냈다. 앞으로는 “사회운동의 병졸”로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지지하고, ‘관헌의 전횡으로 인해 억울해 하는 이의 사건’과 ‘부호의 폭력과 학대에 고민하는 약자의 사건’, ‘진리의 주장에 간섭하는 언론범사건’, ‘소요사태나 치안 위반 등, 사회적 의의를 갖는 무산계급의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특별사건들’만을 변호할 것을 선언하였다. 즉, 무산정당운동, 부락

민해방운동, 반전운동에 적극 관여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後藤守彦 2010). 사회적 사건 이외에 후세가 받아들인 사건이 있다면 사형범 사건들이 있었으며, 동시에 바쁜 일정 때문에 동경에서는 일반 사건의 변론을 수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와 영달의 길을 버리고 ‘나의 이후의 표준생활’을 설정하여 청빈한 삶을 살겠다고 밝힌 것이다(大石進 2010).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 사회문제 뿐 아니라 조선인, 대만인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데도 적극 나설 것을 선언하였는데, 여기에는 1919년의 2.8선언과 3.1운동이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기 혁명의 고백’을 전후하여 후세는 보통선거 운동, 사법제도개혁 (배심원제 주장), 폐창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모두 개별적인 사안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후세의 기본적 입장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제한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국세 10엔 이상의 세금납부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전체에서 유권자는 150만에 불과했으며 후세도 38세가 되던 1917년 4월의 총선에서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1919년 5월에는 선거자격이 국세 3엔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보통선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후세의 보통선거 운동은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조합들은 보통선거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운동으로 인식하였고 급진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통선거권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는 보통선거 뿐 아니라 거기에 부인참정권과 식민지 주민의 참정권을 포함시킨 독자적인 주장을 펼쳐 나갔다. 그는 보통선거 운동을 인권의 관점에서 보았으므로 폐창운동 단체들과 일본기독교부인 교풍회 등의 단체들과도 함께 운동을 진행해 나갔다. 1924년, 후세는 위로부터의 선거권 부여에 대항하여 ‘급진철저 보통선거를 주장하였는데 민권운동 초기였던 1917년에 비하면 한층 더 좌익의 주장에 가까워진 상황이었다. 1925년에는 보통선거법이 성립이 되었으나, 여성은 여전히 제외된 채였다.

‘고백’의 다음 해인 1921년, 후세는 고베시의 노동쟁의 탄압에 대한 조사단 구성을 계기로 법조계의 유지들과 함께 자유법조단을 결성하였다. 이후 사회문제 관련 변호를 위한 후세의 많은 활동에는 자유법조단의 지원이 함께 하게 되었다. 당시 무산계급 조직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1922년 2월에는 과격사회운동 단속법안이 제국의회에 제출될 정도였다. 1922년 3월에는 수평사가 창립되었으며, 그 해 4월에는 후세와 깊이 관여해온 일본농민조합이 결성되었다. 그 해, 후세는 세입자동맹을 결성하고 총책임자로서 간다 기독교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1925년에는 군마현의 미해방부락인 세라다촌이 다른 부락민에게 습격당해 120명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후세는 이 사건의 변호 경험을 통해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서'<sup>6)</sup>라는 글귀를 지어 묘석에 새기게 하였다(布施柑治 2003).

그는 1924년 6월 정치연구회를 조직한다. 무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적인 단일 무산정당의 탄생을 대중적으로 준비하는 조직이라는 명분하에 요쓰야에 있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한 칸을 사무국으로 제공하였다. 정치연구회는 좌우파 성향으로 나뉘어졌다. 우파는 의회다수당 구성이 목표인 반면, 좌파는 의석 확보 보다는 대중 투쟁을 위한 정당 조직을 목표로 하였다. 후세는 우파의 출세주의에 실망하여 좌파에 동참하였다. 1925년 보통선거법과 치안유지법(공산당 조직을 범죄로 지정, 최고 징역 10년)이 성립되자 우파 성향의 회원들은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1926년 정치연구회에서 전국적인 단일 무산정당이라는 명문으로 노동농민당이 출범하였다. 후세는 그 당의 고문으로 추천받아, 1928년 2월 최초의 보통선거 총선에서 니가타 제2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후세는 당내의 출세주의를 비난함으로써 도쿄지부 연합회의 반감을 싸게 되어 출마하지 않았으나, 니가타 지부 연합회의 간곡한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 출마한 것이었다.

1928년 3월 15일, 무산정당 설립을 위해 움직이던 일본 공산당의 활동가들 900여명이 전국에 걸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3.15사건이 발생하였다. 후세는 4월 자유법 조단원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구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자 후세는 도쿄에서 기소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재판할 것을 주장하는 단일공판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상태에서 오사카에서 공판을 받던 피고인단이 동일한 요구를 하며 공판장을 뛰쳐나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때부터 후세는 드디어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법부 탄압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 오사카의 법정소동으로 후세는 선동죄로 기소되어 1932년 변호사 자격박탈 판결이 내려졌다. 그의 나이 53세였다. 그리고 1933년에는 신문지법 위반으로(1927년부터 발행해 온 개인잡지 『법률전선』이 1930년 기소됨) 3개월간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또한 1933년 9월 일본 노동변호사단 회원들이 치안유지법 위반 용의로 일제히 검거되었을 때 후세도 20명의 단원과 함께 검거되어 이치가야 형무소 미결감방에 투옥되어 1년 3개월 뒤인 1935년 3월에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석방전인 1934년 3월에는 치안유지법 위반 용의로 기소되었는데 5년 후인 1939년 5월, 치안유지법위반용의사건의 상고가 기각되고 징역2년, 미결산입 200일이 확정되었다. 1933년 12월 황태자 탄생 기념 특사로 후세의 변호사 자격은 회복되어 센다이 변호사회에 재등록되었다. 그러나 1939년 6월에

6) 오오이시(大石進 2010, 308)에 따르면 이 글귀(生きべくんば民衆とともに,死すべくんば民衆のため)는 후세 다츠지 현창비에 적혀있는 그의 좌우명으로, 1917년 보통선거운동에 나섰을 때 처음 나온 것이었다고 한다.

수감되었다가 특사로 감형되어 400일 만에 풀려났다. 그 러는 사이 샌다이 변호사회의 변호사 등록이 말소되어 패전 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자기혁명의 고백’ 이후 인권변호사로 불리던 후세는 1928~29년 무렵부터 ‘극좌변호사’로 불리기 시작하였다(布施柑治 2003). 그리고 1921년 처음으로 ‘공산당’을 자처한 단체가 활동할 때부터 10년간 거의 모든 공산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였다. 고토 모리히코는 이러한 후세의 활동을 “불굴의 투쟁”이라 묘사하면서 “권력 측에서 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미운 존재”였을 것이라고 한다(後藤守彦 2010, 90). 그 때에 이르러 후세는 일본 정부로부터 좌익 혹은 공산주의자로 각인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IV. 후세의 변호활동의 시대적 배경

### 1. 혁명의 시대와 요시노 사쿠조의 민본주의

후세의 성장과 사회활동은 전쟁과 혁명의 시대와 함께한 것이었다. 검사직을 그만둔 직후인 1904년 후세는 러·일전쟁에 대한 톨스토이의 반전론에 크게 감명 받았다. 그리고 1910년대 여러 군주제 국가들이 수많은 혁명들 (신해혁명, 러시아혁명, 독일혁명, 오스트리아-헝가리혁명)의 결과로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민주주의 개혁과 정당정치, 보통선거 등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의 본격화, 그리고 의무교육, 대학교육 등과 같은 교육의 확대와 자유분방한 예술활동의 보장 요구 등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갔다. 후세는 활동이 본격화하는 1916년 일본에서 대정민주주의 시기를 여는 기폭제가 된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민본주의론에 고무되었다(學習研究社編集部 1971, 42-47).

요시노의 민본주의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천황의 주권을 승인한 위에, 천황이 국민의 이해에 따라서 통치하고, 제한적인 국민참여의 민주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천황과 정부의 기본목표로 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통선거권의 확립,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책임내각제의 수립, 군부와 관료중심의 변별정치의 철폐, 등을 필요조건으로 주장하였다.<sup>7)</sup>

요시노는 1916년 3월 만주와 조선을 방문하고 현지 상황을 관찰하고 돌아갔다. 그는 일본과 조선총독부 정책의 부당성과 3·1운동과정에서 있었던 조선인 학살을 폭로하고

7)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isgi.d\\_0013](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isgi.d_0013) (검색일: 2020. 01. 12.). 참조.

그러한 정책과 현지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일본 국민의 양심이 마비된 탓이라고 비판하였다. 조선에 대해서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한 다음 일본 국내의 대정민주주의 정책을 식민지 조선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1918년 여름, 일본에서 발생한 쌀소동은 유명세를 타던 형사변호사 후세의 인생 뿐 아니라 조선인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10월 혁명이 성공하면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다. 러시아가 1차 대전 참전을 중단하고 독일과 강화를 맺자 일본의 데라우치 내각은 미·영·불 3국과 협약을 맺고 1918년 8월 2일 시베리아 출병을 선언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1차 대전의 진행과 함께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1917년 후반부터 쌀값이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에는 지주들과 매곡상들의 매점매석이 있었다. 민중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시베리아 출병을 선언하자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출병 선언 다음날 '쌀소동'에 참가한 인원은 1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출병을 강행하였고 민중봉기는 정부반대 투쟁으로 확대되어 갔다. 107개 시정촌에 군대가 출동하여 진압하였으며 소동의 참가자들은 노동자, 인부, 집꾼 등 무산대중들이었다. 그 소동의 결과 데라우치 내각이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이 소동은 일본에서 계급 투쟁이 급진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듬해 조선독립 만세사건의 기폭제가 되었다(森正 2014, 304).

## 2. 대정민주주의와 시민 사회운동

대정민주주의는 대체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1차는 1905~1914년으로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체결에 반대한 시민운동으로 시작하였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배상금없는 영토 할양으로 마무리되자 전쟁에 동원되었던 병사들과 총력전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려온 시민들이 히비야 공원에서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강화조약 과정에서의 비밀주의, 국민요구의 무시, 언론탄압, 그리고 계엄령 등은 있을 수 없는 비헌법적 행위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이 국가와 국민의 대립구도로 받아들여졌다. 그 에너지가 대정민주주의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荒川章二 2001). 시민운동은 일본의 군비확장 반대와 악세폐지 운동 등으로 이어졌으며, 1913년에는 1차 호헌운동이 진행되면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도시 중간 계층과 비특권 자본가 계층이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헌법학자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 達吉)가 천황기관설을 주장함으로써 1912년 우에스기 신키치(上杉慎吉)와 일대논쟁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미노베의 주장은 다이쇼 시기 지배적인 헌법학설로 자리잡게 되

었으나, 군국주의가 횡행하던 1935년에 이르러 반국체적이라는 이유로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된 2차 시기에는 지방중소도시의 중간계층 중심의 시민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보통선거와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 존중, 그리고 무력에 기초한 팽창정책 반대 등을 주장하였다. 요시노 사쿠조가 민본주의 이론을 제시한 것이 이 시기이다. 3차 시기는 1918년~1925년의 시기로 1차 대전 중의 시베리아 출병으로 인해 쌀소동이 발생한 것과 국제노동기구 설립 등으로 민중의 자각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노동자와 농민 조직의 급속한 발전과 정당정치 발전, 불만무마를 위한 의회정치 수용, 그리고 보통선거의 시작 등이 이 시기 일본정치의 주요 변화들이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시민운동 세력들은 극우정치 세력을 견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치안유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왜곡된 형태의 민주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 들어서면서 군국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의회정치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918년의 쌀소동 이후 일본에서의 계급투쟁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발전하였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같은 피지배계층의 사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주의자들과 결합함으로써 사회운동이 급진화, 본격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당시의 파업 상황을 보면, 1916년에는 108건, 참가인원 8,413명이었던 것이 1917년에는 398건, 57,309명으로 늘어났고 1920년 4월까지 계속해서 증가해 갔다 (<표 1>). 당시 치안경찰법이 파업을 금지하고 엄격한 탄압을 실시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운동은 다시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하여 1920년 12월에는 일본사회주의 동맹이 결성되었는데, 사회주의자들이 사상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움직임이었다. 곧 이어 1922년에는 국제공산당(코민테른)의 일본지부인 일본공산당이 성립되었다.

후세가 활동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후세가 택해 온 삶의 궤적들이 시대와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평가하는 대정민주주의의 시대상이 후세의 삶과 오버랩되고 있다. 검사의 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의 길을 택한 것, 형사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쌓아 나가던 그가 인권변호사로의 전환한 것, 인권변호의 장을 법정에서 사회로 옮긴 것, 그리고 좌익 변호사로 불리면서 결국은 자신이 정부의 견제를 받게 되고 투옥되고 변호사자격증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는 길이 일본의 대정민주주의 시대의 사회운동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노동쟁의의 증가 (내무성과 후생성 조사)

|      | 노동조합수 | 조합원수    | 노동쟁의건수 | 동참가인원  |
|------|-------|---------|--------|--------|
| 1916 |       |         | 108    | 4,813  |
| 1917 |       |         | 398    | 57,309 |
| 1918 | 107   |         | 417    | 66,457 |
| 1919 | 187   |         | 497    | 63,137 |
| 1920 | 273   |         | 282    | 36,371 |
| 1921 | 300   | 103,442 | 246    | 58,225 |

출처: 學習研究社 編集部(1971, 61).

그 만큼 후세가 시대의 요구에 충실하게 민중의 편에 서서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후세의 활동자체가 그 시대의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거론되는 쌀소동과 보통선거 운동, 일본공산당의 결성과 노동·농민 운동의 활성화 등에는 후세가 깊이 개입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민중들을 변호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조선인들에 대한 후세의 지원과 변호가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조선을 식민지배하고 있던 당시 일본인으로서의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 V. 후세에 대한 이해

### 1. 후세는 공산주의자였는가?

우리나라에서 후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구나 갖는 의문은 바로 후세가 공산주의자였는지 여부일 것이다. 후세는 사회주의 사상을 믿고 공산당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공산당에 입당은 하지 않았다. 전전에 그와 함께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변호사 친구들의 다수가 공산당에 입당했다. 그들 중 전향하지 않은 이들은 후세가 천황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전후에는 후세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만년의 후세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믿으면서도 입당하지 않은 대중이 일본에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 대중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대표할 작정으로 입당하지 않았다. 입당하지 않아도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正木ひろし 1954)”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입당하지 않았

지만 박해받는 공산당원들의 친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조선인 활동가들(대부분이 무정부주의자이거나 공산당원들이었지만)에게는 ‘우리 변호사 후세’ 혹은 ‘인권·민중 변호사’로 불리었으나 일본인들에게는 ‘일본 무산계급의 맹장’ 혹은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좌익 변호사’로, 특히 일본 치안 당국에게는 ‘적색 변호사’로 알려져 있었다(金一逸 1974).

이에 대해 고토 모리히코(後藤守彦 2010, 131)는 후세를 “입당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라 부른다. 후세는 노동농민당에는 입당도 하였고 당적을 두고 입후보하기도 하였으나 일본공산당에는 가입한 적이 없다. 그러나 고토 모리히코는 그의 계급적 인식은 분명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평가한다. 그 이유는 평소에 후세는 무산계급, 노동자 계급은 단결해서 계급투쟁을 전개하고 권력을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으며 그가 그리는 이상사회, 즉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가 실현되고, 피지배계급에 의한 자치가 행해지는 사회란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33년 9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노동변호사단의 변호사들이 일제히 검거되었을 때 후세만이 전향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었다. 그것에 대해 후세는, “전향은 체포전 마르크스 신념이 있던 사람이 바뀐 것을 말하지만 나는 솔직히 신봉하든 안하든 마르크스주의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약자나 괴롭힘을 당하는 자를 위해 권력과 싸워왔지만, 그것은 ‘사상이나 이론과 같은 것에 근거한 지도 체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와 정의감에 의한 것(布施辰治 1935; 後藤守彦 2010, 131)”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에 대해 고토 모리히코는 겸손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다른 많은 연구자들은 그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모리나가 에자부로(森長英三郎 1956, 45)는 후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평가는 “인도주의에 입각해 사회운동을 전개한 변호사”라고 한다. 또한 모리 타다시(森正 2014, 김창록 2015에서 재인용)는 그를 사상을 가리지 않고 “고난에 처해 의지처를 찾는 사람을 위해 진력한 변호사”로 평가하였다.

## 2. 후세의 철학과 신념

그가 좌익에 치우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오오이시는 후세를 평화주의자, 사형폐지론자, 생명 제1주의자로 평가하고 그러므로 테러리즘도 폭력혁명도 원리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무정부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변호하

였으며, 피고인의 의사가 선량하다고 인정하는 한, 정당정파 구별 없이 모든 형사피고인을 위해 변호하였는데 그것이 후세가 선택한 변호사의 길이었다는 것이다(大石進 2010, 98).

폭력배들의 형사사건 변호에서부터 공산주의자들의 법정변호에 이르기까지 후세의 폭넓은 변호활동에 일관되는 요소들이 있다. 바로 양심과 인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타의 정신이다. 후세는 늑대의 직이라 부른 판사, 검사, 경관에게도 같은 인간으로서의 측은지심, 혹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판·검사의 인간성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피고인의 인간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성선설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변호사의 직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판·검사에 대한 설득의 가능성을 믿는 것, 그러한 믿음이 후세의 강력한 변호의 기초였던 것이다.

또한 후세의 삶과 행동의 뒤에는 일관된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타의 정신이다. 후세간지(布施柑治 2003)는 『어느 변호사의 생애』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아버지에 대해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아버지는 자신감이 넘치고,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한 분으로 이기적인 성격은 참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F씨가 일생을 일관되게 살아왔다는 사실이야말로 이색적이라고 생각 했습니다(2003, 18~19)” 고토 모리히코는 후세의 인생철학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타의 정신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양심을 가진 보편적 존재라고 하는 사고에 기초하여, 약자나 억울한 자, 차별받는 자를 위해 힘쓴다고 하는 정신이다. 거기에는 무정부주의자, 공산당원, 조선인과 같은 선별이나 차별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후세가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이 정신에 기초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후세가 비록 묵자와 톨스토이로부터 배웠다고 하나 행동은 자신의 몫이라고 할 때, 후세는 어떻게 변함없이 이타주의를 실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으로 후세의 경우에도 톨스토이처럼 자신의 삶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작업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이타의 정신이 있었기에 판사의 양심을 믿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3. 후세의 현실감각

우리는 신념과 생각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냉엄한 현실 인식에 기초한 판단이 뒷받침될 때만이 그 신념의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변호사로서의 후세의 성공 뒤에는 물론 후세의 ‘변호의 기술’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력, 즉 돈이 있었다는 것이다. 1950년 어느 좌담회에서 후세는 “외부로 부터의 원조는 전혀 없었다. 저희들이 전부 낸 것이다. 자기 자신의 활동을 조달할 정도의 경제력과 자기희생의 정신이 없는 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大石進 2010).” 라고 밝힌 바 있다.

후세는 1920년 자기혁명의 고백 때 이미 명성있는 변호사였고, 그 후에도 지방민들의 사건을 수입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사형 사건에서는 단골 도박꾼들로 부터 충분한 보수를 받았다. 그 수입으로 마음껏 사회활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누구나 조선에 건너가고, 조선인과 연대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이등칸 (오늘날 일본의 그린차, 한국의 특실에 해당. 1호차는 침대차)에 탈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大石進 2010, 207). 당시 궁핍한 생활을 하던 서민들은 대부분이 2등 차는 부르조아 소비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다. 후세가 전전의 계급투쟁 때 주변 비관에도 불구하고 항상 2등 차를 이용한 것은 조선에 가든, 대만에 가든, 후세에게는 차 안이 유일한 휴식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후세가 활동하던 시기 얼마나 열정적이고 초인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후세는 ‘자기혁명의 고백’ 이후 3가지 잡지를 간행했다. ‘법정에서 사회로’(1920. 6~1921.8), ‘생활운동’(1922.11~1927.5), ‘법률전선’(1927.7~1930.11) 등을 10년에 걸쳐 간행했는데 대부분이 자신의 저작들로 구성된 것이었다. 개인저작활동의 결과 30여 권의 저작과 700여 편의 논문을 집필할 수 있었다. ‘자기혁명의 고백’이 나오기 이전 2년간의 사건 취급 수는 연평균 250건 상회하였고, 기일지정을 받은 재판소 출정수는 1일 평균 4건, 거기다 별도로 동경감옥의 미결인원 약 700명 중 후세가 담당하고 있던 수는 52명에 달했다. 심지어는 아라키정(荒木町)의 사무실이 형무소까지 500m 거리에 있었던 것마저도 그의 초인적 활동의 필수조건이었다(大石進 2012, 제4장).

또한 ‘자기혁명’의 주요내용 중에는 동경에서는 일반 사건의 변론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사건들로 인해 초인적으로 바쁜 일정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지방의 일반사건은 수입하였는데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회적 사건의 공판에 참가하였다. 후세의 영업비밀을 들여다보았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후세와 가까웠던 한 지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오사카에서 도박 싸움이 나면 모두가 후세를 부른다. 기차 2등 칸을 타고 일류의 숙박시설에 머무르게 하려면 상당한 일당을 지불해야 했지만 오사카의 모두가 후세를 부르자고 하고 존경했다. 후세는 지방에 가면 반드시 형무소에 가서 변호사가 없는 사람을 면회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체류를 연장해서라도 그 사람을 변호하였다(大石進 2012).

#### 4. 후세의 성격과 가족관계

후세는 자기혁명과 함께 가족의 혁명도 함께 했다. 관동대지진 직후 지진 피해자들이 많이 모이는 우에노 부근의 세입자동맹의 텐트촌에 세워진 세입자 무료 법률상담의 입간판 옆에서 후세의 처 미츠코는 갈대밭을 친 식당을 시작하였다. 염가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미츠코는 장기인 간장맛 카레라이스를 간판메뉴로 삼았다. 당시는 카레라이스가 화이트칼라 요리로 취급받던 때였다. 여학교 1학년 12살이 된 장녀 노부코는 식당에서 도우미로 일을 했다. 노부코는 7살 때 히비야 공원에서 “보통의 꽃”을 팔아 보통선거 실시를 주장하는 후세의 활동을 지원했던 적도 있다. 가족이 모두 사회운동에 참가한 셈이었다(大石進 2010).

후세는 3삼 4녀를 두고 있었는데 첫 딸인 노부코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고, 아들들과의 관계는 좋지 못했다. 장남이었던 후세 간지(布施柑治 2003)는 그의 저서에서 아버지 후세를 “F씨”라 부르고 종전 직후의 후세에 대해 “뜻밖의 자유를 얻은 F씨는 무언가 큰일을 벌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말하자면 F씨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일에 굶주려 있었다(134)”라면서 10월말 ‘진주군 환영 민중 대회’를 주최하고자 노력하는 후세의 모습을 “진주군에게 자기 존재를 알리려는 듯한 태도”라고 묘사하였다. 그리고 둘째 아들(노부오)는 어린 시절 사망하였고, 셋째 모리오(杜生)도 옥중에서 사망할 때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후세의 처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미츠코에 대해서도 경제력이 있는 여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속적이었으며, 후세와 관계가 좋은 않았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오이시 선생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sup>8)</sup> 병오(丙午, 장남 후세간지(布施柑治)의 어릴 적 이름)는 동경에서 멀리 떨어진 야마카다 대학에서 입학시험을 치른 후 합격 소식을 듣고 후세의 본가가 있는 헤비타촌에 들렀다. 병오가 너무 기쁜 나머지 경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병오의 큰아버지는 후세에게 자식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냐고 질책했다. 그 일이 있던 이후부터 병오를 보는 후세의 눈빛이 차가와 지기 시작했다. 거기다 병오가 매춘으로 중이염을 앓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의 매춘은 욕구의 문제를 넘어 후세의 매매춘반대 운동에 대한 반항심의 발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일로 인해 후세는 몇 번이나 병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반면 병오는 후세의 생활방식에 대해 ‘독선’ 혹은 ‘과대망상’이라고 비판하고 다녔다.

후세의 처인 미츠코는 결혼 전 남자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츠코의 본가에서는 병오가 후세의 아들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그러한 응어리가 후세에게도 병오에게

8) 저자와 오오이시 선생 인터뷰 내용 (2019년 10월 29일, 선생의 자택에서 인터뷰).

도 상대방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후세에 대한 병오의 시각에는 악의적인 왜곡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병오에게는 자신이 후세의 자식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으며 그것이 그로 하여금 『나는 양심을 믿는다』를 쓰게 했을 것이다. 병오는 후세가 말기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한번도 문병을 오지 않았을 정도로 둘의 관계는 단절 상태였고, 후세가 사망한 뒤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했을 때는 가족들로부터 거부당해 주변의 중재로 겨우 말석에 앉을 수 있을 정도였다.

삼남 모리오노 교토대학에 입학한 후 아버지의 철학에 감동받아 조선인들 지원 활동을 하다가 1944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 투옥되어 고문 끝에 교토형무소에서 옥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토시에(歲枝)라는 여자와의 결혼에 대해 후세가 반대한 데 대해 허락을 요청하는 ‘일신상의 변명’이라는 서간을 남기고 있다. 모리오가 반전운동에 참가했을 당시 동지로서 토시어를 만났는데 그녀에게는 이미 정혼남이 있었고 그 또한 반전운동의 동지였다. 세 명은 모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투옥되는 경력을 갖게 되는데, 토시에의 정혼남이 투옥되어 있던 중, 출옥상태에 있던 둘의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민법에서는 결혼에는 호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으나 후세는 그 결혼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 거기에는 단순한 인륜의 문제 뿐 아니라 동지에 대한 배신을 허락해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감정도 있었던 것 같다. 결국 모리오노 분가해서 스스로 호주가 되어 토시에와 결혼하기에 이른다. 1942년 9월, 모리오노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다시 경시청 특별고등경찰에 체포되어 교토로 이송되고, 예심 중이던 1944년 2월, 29세의 나이로 교토구치소에서 영양실조와 폐결핵으로 옥사하였다(正木ひろし 1954).

이상과 같은 오오이시 선생과의 인터뷰 진술을 보면 두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두 아들들은 공통적으로 후세의 강한 자기현시 욕구와 서투른 문장을 참지 못하는 성격에 대해 부정적인 뉴앙스로 남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오오이시 선생도 이러한 감정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한다. 또한 오오이시(大石進 2010)도 후세에 대해 ‘강렬한 성격’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후세 자신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낙관적 인생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성자필멸을 믿지 않았고 제자들이 모두 공산당으로 가버려 혼자 남았을 때에도,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는 고독해 보였을 때도, 스스로는 고독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성격이다. 병오도 그의 저서에서 후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다. “F씨는 우연히 안 사실이나 선입견으로 사물의 이치를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고는 실제로 그렇다고 믿어버리는 사람이었다. 실제로 F씨 추측이 맞아떨어져 자신도 만족하고, 사회적으로도 도움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완전히 빗나갈 때도 있었다(布施柑治 2003, 136).”

## VI. 결론

이 연구는 우리가 ‘일본인 선들러’라고 부르는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라는 인물에 대한 것으로, 조선인들을 위해 몸을 던지는 변호와 그들과의 신뢰관계를 지속해 나간 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왜 그가 한일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지, 왜 대한민국 건국헌장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와 조선민중들과의 관계는 1919년 2·8 독립선언 참가자들에 대한 변호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53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조선인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는 일본에서의 후세의 활동을 조선인들에 대해 보여준 그의 변호 활동과 대비시켜 사회적 인물로서의 후세의 활동들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후세가 보여준 그러한 변호활동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것이다. 1차 대전을 전후하여 시작된 대정민주주의 시기의 일본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들은 후세의 활동과 일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개인사를 통해 본 그의 사회적 활동의 개인적 배경을 분석한 것이다. 그의 변호활동은 그의 사상만큼이나 인간의 양심에 대한 굳은 믿음과 민중을 위해 살겠다는 신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넷째로, 그는 강렬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그러한 성격은 후세의 가족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답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후세의 조선에 대한 애정은 식민지 민중들의 어려운 삶에 대한 일체화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인들과의 연대감이 더욱 깊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후세의 민중들에 대한 애정은 상대방으로서의 민중이 아니라 자신도 민중이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그의 좌우명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배운 청빈한 삶에 대한 열정과 세속적 출세에 대한 거부감, 출세가 아닌 철학 공부를 위한 동경으로의 진학 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후세의 민중성과 농민성이 조선에 대한 그의 연대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후세는 공산주의자 보다는 ‘급진적 민주주의자’<sup>9)</sup>에 가깝다는 점이다. 후세는 공산당에는 입당한 적이 없지만 공산주의자들의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일본공산당의 창당 이전의 최초 참가자들과 함께 노농농민당의 창당에 참가하였고 그 당의 후보로 총선에 나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통선거운동, 폐창운동, 사법개혁운동 외에도 천황제

---

9)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오오이시(大石進) 선생과의 답변에서 나온 표현.

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자연적 소멸의 주장, 법정 투쟁을 통한 민중 변호(법정지상주의)와 인간의 양심을 믿는다고 하는 성선설에 기초한 인간관, 그리고 경제력 유지를 위한 변호 활동 등은 그의 사상과 활동이 공산주의 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운동을 추구한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나고야 대학의 모리 타다시(森正)교수는 후세의 명치헌법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명치헌법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명치헌법의 근대적 측면을 조명한 미노베 다츠키치의 천황기관설과 요시코 사쿠조의 민본주의론에 동조하였으며,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그러한 면에서 후세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10)</sup>

후세의 사상적 위치와 상관없이 일본과 조선에서 조선인들의 편에 서서 강력한 변호를 해 줄 일본인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조선인들에게는 더 없는 구원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한일관계는 부침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일 역사화해를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이루어야 할 과제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한일 관계가 엄중한 상황에 처할수록 후세를 떠 올리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양국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

10) 布施辰治誕生130年 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布施辰治』 출처: <http://www.fuse-tatsuji.com/commentary.html> (검색일: 2019. 12. 13.).



- 강덕상. 1999.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 역비논단 47, 177-197.
- 김창록. 2015. 후세 타츠키(布施辰治)의 법사상 : ‘조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6(1), 45-91.
- 오오이시 스스무. 2010. 후세 다츠지의 생애와 조선. 고사명, 이형남, 이규수. 임희경 역. 조선을 위해 일생을 바친 후세 다츠지. 지식여행, 15-100.
- 이경주. 2019. 후세 다츠지와 박열의 헌법의식: ‘조선건국헌법초안’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36, 79-130.
- 이규수. 2003. 후세 다츠지(布施辰治)의 한국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25, 407-432.
- \_\_\_\_\_. 2010. 조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일본의 선들리’, 월간조선 9월호.
- 이문영. 2016. 톨스토이 대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평화사상과 평화실천. 외국학연구 35, 199-230.
- 이형남. 2010. 후세 다츠지와 재일 조선인. 오오이시 스스무, 고사명, 이형남, 이규수. 임희경 역. 조선을 위해 일생을 바친 후세 다츠지. 지식여행, 191-212.
- 정창현. 2009. 조선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난 후세와 박열, 그리고 박영효: 남과 북, 재일동포의 공동자산. 민족 21(95), 110-115.
- 후세 다쓰지·나카니시 이노스케. 박현석 역. 운명의 승리자 박열. 인문의 숲.
- 荒川章二. 2001. 軍隊と地域: シリーズ日本近代からの問い. 青木書店.
- 大石進. 2010. 弁護士布施辰治. 西田書店.
- 金一勉. 1974. 日朝関係の視角: 歴史の確認と発見. ダイヤモンド社.
- 後藤守彦. 2010. 只 意志あらば植民地朝鮮と連帯した日本人. 日本経済評論社.
- 學習研究社編集部. 1971. 大正デモクラシー; ヴェルサイユ體制; アジア民族運動. 學習研究社.
- 布施柑治. 황선희 역. 2003. 나는 양심을 믿는다: 조선인을 변호한 후세 다츠지의 삶. 현암사.
- 布施辰治. 1947. 3・1 運動の思い出. 民団新聞. 2月(第2号).
- \_\_\_\_\_. 1923. 無産階級からみた朝鮮解放問題. 赤旗 1(1).

- \_\_\_\_\_, 1935. 轉向非轉向の弁一. 社会運動通信, 6月15日号.
- 正木ひろし. 1954. 一弁護士の墓碑銘-故布施辰治のこと. 中央公論 3月号, 174-177.
- 森正. 2014. 評伝布施辰治. 日本評論社.
- 吉野作造. 2016. 憲政の本義 吉野作造デモクラシー論集. 中央公論.
- 水野直樹. 1983. 弁護士布施辰治と朝鮮. 季刊 三千里 34. 28-36.
  
- 誕生130年ドキュメンタリ映画布施辰治. 출처: <http://www.fuse-tatsuji.com/commentary.html> (검색일: 2019. 07. 08.).

● 투고일: 2020.01.30. ● 심사일: 2020.01.30. ● 게재확정일: 2020.02.13.

## | Abstract |

# Reevaluation of Husse Tatsuji's Ideology: Communist vs. Democrat

Choi Woondo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behaviors of Japanese lawyer Husse Tatsuji, whom we call “Japanese Schindler.” Korean society had doubt about his political orientation as a communist. Although his activities was radical and left-leaning, he also supported universal (including female) suffrage, shut-down of the state-regulated prostitution and introduction of jury system. They were interacting with the tide of the social revolution that was being circula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civil movement in Japanese society, under the name of Taishō Democracy. His activities as lawyer reflected as much a firm belief in human conscience as his ideas and a belief in living for the oppressed. He pursued these goals within the parameter of Emperor system and its legal order. He was also an owner of an compelling character, which is reflected in his family life. This study concludes that he is not a communist or socialist but a democrat though rather radical.

〈Key words〉 2.8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Great Kanto Earthquake Japanese Schindler, Taisho Democracy, Husse Tatsuji